

예 산 총 칙

2019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187,243,597	5,617,308
일반회계		162,056,914	4,861,707
특별회계		25,186,683	755,600
	기타특별회계	25,186,683	755,600
	의료급여기금	378,384	11,352
	주거환경개선사업	532,265	15,968
	주차장	23,964,061	718,922
	지하수관리	289,199	8,676
	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	22,774	683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714,545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